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농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공간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 뿐만 아니라 그 거리를 매개할 대중교통 여건불리한 점을 고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나. 농지법 개정(법률 제19877호, 2024.1.2. 공포, 2024.7.3. 시행)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가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다. 또한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등 법령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 규제 완화(안 제29조 개정)

나.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의 입지 규제 완화(안 제38조 개정)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시 추가된 건축물에 대한 농업보호구역 허용행위 시설 추가(안 제30조 개정)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시 추가된 건축물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면적제한시설 추가(안 제44조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항”을 “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하일”을 “이하일 것, 다만 제7항제11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총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시설

가. 농어업 분야 내국인 근로자

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제3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바목까지 및”을 “바목까지,”로, “제외한다)에”를 “제외한다) 및 자목”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중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를 “법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3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9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제2항제1호라목(중전의 다목) 중 “가목 및 나목”을 “가목·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9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3년

④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작물 생산용 인공광원
2. 양액·관수 제어기술
3. 작물 생산환경 제어시스템
4. 에너지·공조 기술
5. 환경·생육 감지 기술

제44조제3항제2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자목부터 카목까지”로, “거목까지 및 러목, 제19호, 제20호가목·사목·아목”을 “거목까지, 러목 및 머목, 제19호, 제20호가목·사목·아목·자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③ (생략)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 <u>농어업인 주택</u> ”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④----- ----- ----- -----. ----- ----- <u>조</u> ----- -----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2. -----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생략)

⑤·⑥ (생략)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삭제

2. ~ 10. (생략)

<신설>

----- 이하일 것, 다만 제7항제11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총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일 ---

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⑦-----

2. ~ 10. (현행과 같음)

11. 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시설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생 략) ②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생 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다. (생 략)	가. <u>농어업 분야 내국인 근로자</u> 나. 「<u>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따른 <u>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u> 다. 「<u>출입국관리법</u>」 제18조에 따라 <u>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u>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바목까지, ----- ----- 제외한다) <u>및 자목</u> ----- 다. (현행과 같음)
---	---

2. (생략)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협의

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7년 이내

나.·다. (생략)

2.·3. (생략)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같은 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협의

가.·나.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의 기간 등) ① -----

--.

1. -----

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36조제1항제5호 -----

나.·다.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3년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가. (생 략)

나. 가목 외의 경우: 3년

<신 설>

3. (생 략)

③ (생 략)

<신 설>

다.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
우: 9년. 이 경우 1회 연장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가목·나목 및 다목 ---

2. -----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
우: 9년. 이 경우 1회 연장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3년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작물 생산용 인공광원
2. 양액·관수 제어기술
3. 작물 생산환경 제어시스템
4. 에너지·공조 기술
5. 환경·생육 감지 기술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①・② (생 략) ③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 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 목까지 및 사목(지역아동센터 만 <u>해당한다</u>),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u>거목까지</u> 및 <u>러목</u>, 제19호, 제20호가목 <u>・사목・아목</u>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 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 9. (생 략) ④ ~ ⑥ (생 략)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 -- <u>해당한다</u>), <u>자목부터 카목</u> <u>까지</u>----- <u>거목까지</u>, <u>러목 및 머목</u>, 제19호, 제20호 <u>가목・사목・아목・자목</u> --- ----- ----- ----- 3. ~ 9.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	
연 락 처	(044) 201 - 1739